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33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한민수·조인철·송옥주

황 희 • 이연희 • 이병진

황정아 • 박해철 • 임오경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자가 해당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파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86조 등).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거·파기등의 명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을 "이하 "수거·파기등""으로 한다.

제48조 중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수거·파기등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수거·파기 등"을 "수거·파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을 "수거·파기등을"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수거·파기 등"을 "수거·파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를 "그 사유와 의

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수거·파기등 및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

修)(이하 "수거등조치"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수거·파기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을 "수거등조치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명령과 제7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 거등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 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 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 4. 수거등조치의 이행방법과 이행기간
-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수거등조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

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 (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명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거등조치의 내용과 실적
- 2.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에게 수거등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본문 중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제80조의 규정"을 "제80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50조제1항 단서"를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 제50조제4항에 따른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50조제5항에 따른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거·파기등의 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물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	
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	
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2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_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	나.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거
거・파기 등의 명령	•파기등의 명령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금지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u>수거·파기 등</u>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

	이하 "	<u>수거 • 파</u>
<u>기등"</u>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	과 같음)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기	등)
		<u>수</u>
거·파기등을 ö	 }여야 호	· <u></u>
거·파기등을 ㅎ		· <u></u>
거·파기등을 ö		· <u></u>
거·파기등을 ö		· <u></u>
<u>거·파기등을 ㅎ</u> 제49조(<u>수거·파</u> 기		<u></u> <u> -</u>

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 ·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 ·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있다.

② ~ ⑤ (생 략)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 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 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 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 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 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

수거·파기등을-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u>수거·파기등</u> 의 명령 등)
①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거・파기등 및 그 물품등
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이하 "수거등조치"라 한다)
<u><단서 삭제></u>

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 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거등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1.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 2.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
 항
- 4. 수거등조치의 이행방법과 이 <u>행기간</u>
-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신 설>

<신<u>설></u>

수거등조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 등조치(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명령의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거등조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거등조치의 내용과 실적
- 2. 수거등조치를 이행하지 <u>못한</u>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 <u>책</u>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 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 차를 생략하고 사업자에게 수 거등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거 등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 거등조치를 마치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수 거등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6</u>						
<u>7</u>	네 <u>1항</u> -					
		수거	등조치]를	<u>할</u> -	
	•					

-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 ⑧ 제1항에 따른 명령과 제7항

<u>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제20조의4제1항·제30조·<u>제50조</u> 또는 <u>제80조의 규정</u>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u>제50조제1항 단서</u>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50조</u> 또는 제80조의 규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3. (생략) ②·③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생략) <신 설>

에	따른	공표방법	등	<u>필요한</u>
사형	항			
		-)		
		ポロス -	zil 1 중L	
		<u>제50조</u> /		_
<u>제8</u>	<u>(() 소</u>			
				<u>제5</u>
<u>0</u> 조	:제5항			
제842	조(벌칙) ①		
		제1항	•	
1.	<u> </u>	<u> </u>		
_				
_				
2. •	3. (현	.행과 같음)	
2	• ③ (1	현행과 같은	$\left(\frac{1}{2}\right)$	
제862	조(과태	료) ① (현	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의 여	<u> 거느</u>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백 5	만원 이
<u>하</u>	의 과티	료를 부과	한다	<u>.</u>

1. 제5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으로 제출한 자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	ㅏ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
다.	

2. 제50조제4항에 따른 수거등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50조제5항에 따른 수거등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